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3 | 2025.07.21 (2025.07.14~2025.07.2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 ,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1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농해수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문체위>, <국토교통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 본격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공정거래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1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1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19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	2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4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26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6
•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27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등 17인) ...	2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2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의원 등 17인)	2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의원·윤종군의의원·한창민의의원 등 22인)	30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ESG]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개정안 공개
-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통합법 제정
- [ESG] GRI 102: Climate Change 2025 및 GRI 103: Energy 2025 발표
- [지적재산권]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사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관련 후속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 본격 착수
 -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
 - '25~'29년 216억원 지원

2025-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힘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 하였음

<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내역사업별 과제 공고·접수·선정 현황 >

내역사업명	과제제안요청서	접수 현황	최종 선정 과제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AI휴머노이드, 에너지하베스팅 각 1개	21개	4개(경쟁률 5.3:1)
글로벌융합연구지원	AI휴머노이드, 자유주제 각 1개	40개	2개(경쟁률 20:1)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함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年 6억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年 12억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現 모방학습 대비 10% 이하)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함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활용(직류 1mW 이상)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함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25.4~'25.6, 5천만원, 6개)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2개)는 다음과 같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하여,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함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하여,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함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 실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2025-07-1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7.17.~10.31.
-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 *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세탁 ⑰운송 ⑱이미용 ⑲자동차 관련 (도소매) ⑳기타도소매 ㉑ 편의점
-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임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함.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힘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의무적으로 기재,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7-18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유지보수·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내용과 유지보수·관리의 종류·항목·방법·주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선임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정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할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16 시행 예정
---------	------------------	------------------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기공사 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대상자를 초급 전기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 인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2 시행 예정
---------	----------------------------------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7-17 시행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통풍 등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 장소에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예정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방식에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사업시행자의 승낙 없이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5.07.14. ~2025.07.28.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 (안 제2조)
 -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 ②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 ③ 민간위원의 임기 (제4조)
 -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전화: 044-202-6122, 팩스: 044-202-6033)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16. ~2025.08.25.
-------	----------------------	-----------------------------

유지관리 기술인력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승강기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기준이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전화: 044-205-4292, 팩스: 044-205-891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16. ~2025.08.25.
-------	-------------------------------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 (제6조의3제1항)**

-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② **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신탁이 활용되나, IMA는 신탁계약이 없고 신탁업과는 별도의 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로서 행하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③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 폐지 (제63조제2항제3호)**

-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증권사 자금조달 시 고유분 외화증권 활용 촉진

④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 (제77조의3제1항, 제2항)**

- 종투사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 충족, 사업계획 및 본인 제재이력 요건, 종투사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요건을 신설하며,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도 신규 도입

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 (제77조의6제2항제4호)**

-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⑥ **IMA 관련 제도 구체화 (제77조의6제3항)**

-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한도를 3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 IMA 운용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 원금지급 상품 명시(단,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등을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2-2100-2654, 팩스: 02-2100-2648\)](tel:2-2100-265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15.
~2025.08.25.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②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07-14 발의

현행법상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회사가 분할(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인 출현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인바 이는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 (안 제342조)
- ②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530조의10)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2025-07-14 발의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안 제363조의2 등)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2025-07-14 발의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안 제355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지배인 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 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런데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되어 왔음. 이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 또는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배임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주가 기업 돈을 쌔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있고,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 강력한 민사적 제재 방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방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임.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기업경영의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이 나서는 것이야말로 시장질서를 살리는 정책적 선택이기에 현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임. 배임죄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기는 또 다른 편향을 낳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배임죄에 대한 「형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의 특별배임죄 조항의 구성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안 제622조 및 제623조)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배임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주가 기업 돈을 쌔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있고,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 강력한 민사적 제재 방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방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임.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기업경영의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이 나서는 것이야 말로 시장질서를 살리는 정책적 선택이기에 현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임. 배임죄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기는 또 다른 편향을 낳을 것임

이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안 제355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2025-07-15 발의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025-07-17 발의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감사위원회위원은 3%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뒤 그중에 다시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감시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권익보호·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경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7제3항 및 제542조의12제2항)**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7-14 발의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부과 최대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규제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42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7-14 발의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임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함.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25-07-17 발의

'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025-07-17 발의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비대면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주민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여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쇄 지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2025-07-18 발의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가 명명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확산되어 국민 경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국부의 창출과 축적이 가능해지는 바, 벤처 기업활동에 대한 장려와 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가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벤처 생태계가 위축을 넘어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으로 벤처 펀드결성에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의 구성비가 23대77로 나타나 민간의 역할이 종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025-07-1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 M&A)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의 원형은 1997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 유래하여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및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하여서는 입법적 공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025-07-18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능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07-16 발의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07-16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025-07-17 발의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025-07-17 발의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

2025-07-17 발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투자 환경 악화로 벤처·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실제로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등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주식 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벤처업계를 향한 정책 기조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벤처투자의 민간투자 저조 및 낮은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벤처시장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4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지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2025-07-1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025-07-18 발의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025-07-1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3항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운반·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제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2025-07-16 발의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2025-07-18 발의

현행법은 위해식품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등 17인)

2025-07-16 발의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개선 계획 미비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2025-07-17 발의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제약, IT·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7인)

2025-07-14 발의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음.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으로 1년 사이 10.2%가 증가하였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7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윤종균의원·한창민의원 등 22인)

2025-07-16 발의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11.29.), 철강·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2025-07-17 발의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에 제정됨.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9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7-1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86조제5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22(화) 14:00	- 타위법 심사, 고유법 상정
	법안1소위	7/25(금) 14:00	- 고유법 심사
정무위	법안1소위	7/21(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7/22(화) 14:00	- 법안 심사
교육위	법안소위	7/22(화) 14:00	- 법안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7/22(화) 14:00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농해수위	법안소위	7/24(목) 10:00	- 법안 심사
환노위	전체회의	7/21(월) 14:00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7/21(월) 14:00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21(월) 07:30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조찬 세미나 : 영화산업 21 년만에 1억 관객 붐과 위기	최형두·박정하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7/21(월) 14:00	AI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	유용원·부승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3(수) 07:00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정동영·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23(수) 08:00	노동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 진보당 수요 세미나	윤종오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7/24(목) 18:20	국가발전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 : 국가발전정책연구 원 제94차 정책세미나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25(금) 19:00	보건의료 지방분권 정책연구 보고회	전종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7/21(월)	「Data+」 통권 제14호(2025-14호) 발간	국회도서관	
	7/22(화)	「금주의 Book Review」 제2025-4호(제4호) 발 간		
	7/23(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4호(2025-14호) 발간		
	7/23(수)	「금주의 서평」 제738호(2025-29호) 발간		
	7/24(목)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1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6호(2025-13호)	국회도서관	
	7/16(수)	「Data&Law」 제32호(2025-7호)		
	7/16(수)	「금주의 서평」 제737호(2025-28호)		
	7/15(화)	「NABO Focus」 제118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15(화)	ESG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개정안 공개
7/16(수)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7/16(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통합법 제정
7/17(목)	ESG	GRI 102: Climate Change 2025 및 GRI 103: Energy 2025 발표
7/18(금)	지적재산권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사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관련 후속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